

# 메이지시대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

김 호 동\*\*

(e-mail : khd223@ynu.ac.kr)

---

## 目 次

---

1. 머리말
  2. 1876년 전후의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의 변화
    - 2.1 1876년 이전의 일본의 영토팽창정책 개관
    - 2.2 1876년 전후의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
  3. 맺음말
- 

## 1. 머리말

한국의 경우 1905년 ‘무주지선점론’에 의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 기도는 메이지시대 일본의 영토팽창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최근 일본이 ‘무주지선점론’ 대신에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무주지선점론’이 일본의 대외영토 확장의 과정에서 조선침략의 제1보였다는 한국 측의 논리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선점론’에 의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하였을까?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동해 지역에 있어서 일본이 관심을 가졌던 섬은 ‘울릉도’였고, 이것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집요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독도’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한 채 일본이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

\* 이 논문은 2009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사 전공

언급할 때 독도가 울릉도의 屬島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의 어로 활동이 독도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거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은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 포인트’ 논리의 부당성도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 성과에서 독도문제를 울릉도와 결부시켜 일본의 독도·울릉도 정책을 검토하기 보다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러일전쟁과 결부시켜서 설명한다든지, 일본의 영토 경계 확정 과정을 통해 일본의 도서 편입 사례과정과 결부하여 독도 문제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주로 1883년 개척령 이후의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의 실태를 다루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sup>1)</sup> 이들 연구들은 일본의 섬에 대한 영토편입이론이 1876년 오가사와라제도의 영토편입에 고무되어 ‘竹島渡海請願書’와 ‘松島開拓之議’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마네현이 죽도(울릉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실어도 되는가의 질품서를 낸 것도 오가사와라제도의 영토편입에 힘입은 바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았다. 본고는 이를 반서하면서 ‘空島制’와 ‘無主地 先占論’이 이때 제기되어 이후의 南鳥島, 독도 竊取에 적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1876년 전후의 일본의 울릉도·독도정책의 변화

### 2.1 1876년 이전의 일본의 영토편입정책 개관

동아시아 삼국의 개국의 시점은 중국의 경우 1840년대, 일본의 경우 1850년대, 한국의 경우 1870년대로 시차적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840년대에서 1870년대에 이르기까지 3국의 내재적 발전의 수준은 별 차가 없었다. 다만 조선과 청국에서의 개국은 각각 서양과의 격렬한 무력충돌(청국의 경우는 아편전쟁, 조선의 경우는 두 번에 걸친 양요 및 강화도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강제적, 피동적 색채가 강했던 것이었음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페리의 내항이라는

1) 허영란, 「명치기 일본의 영토 경계 확정과 독도-도서 편입사례와 ‘죽도 편입’의 비교-」 『서울국제법연구』 2003.

허영란,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2006.

최문형, 「러일전쟁과 일본의 독도 점취」 『역사학보』 188, 2005.

송병기, 『개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강한 압력 아래 행해진 것이기는 하나 무력충돌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국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개국은 구미열강의 외압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중국과 공통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구미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룩하여 초기의 불평등조약체제로부터 탈피해 나갔으며, 독립(국민국가)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막부 하에서 상업자본을 축적한 조닌 계층의 대두와 蘭學을 통한 근대적 학문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진국이 보다 선진적인 나라의 외압에 직면하면서 근대국민국가를 수립하려고 할 때 정치적 변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아시아 삼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는 시기는 1840년대, 50년대, 70년대라는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내재적 발전의 정도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편입된 상태 하에서 자기나라의 국민경제를 일으켜 나가려면 외압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 또 위로부터의 정치적 개혁에 의해 국민들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낡은 체제를 변혁하고, 근대적 체제를 수립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삼국이 1894년을 계기로 서로 다른 역사적 행로를 걷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 가운데 일본은 정치적 변혁(메이지유신)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세계자본주의체제하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고 민족적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국가 수립에 성공할 수 있었고, 중국의 경우 정치변혁에 상당히 실패했기 때문에 반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한국의 경우 정치적 변혁이 좌절됨으로써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sup>2)</sup>

일본은 에도 막부의 쇄국정책에 의해 네덜란드·중국과의 창구인 長岐, 조선과의 창구인 尙馬, 琉球와의 창구인 薩摩, 그리고 아이누와의 창구인 松前으로 해외와의 접점이 제한되었었다. 그렇지만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발돋움한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海防論을 던지고,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의 진출을 꾀하게 된다. 대만 정벌(1874), 사할린[樺太]·쿠릴[千島] 교환협정의 체결(1875),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의 편입(1876), 류우큐우[琉球]의 귀속(1879)을 통해 외곽도서의 소속이 불투명한 섬들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메이지시기를 경과하면서 축적한 일본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험과 힘, 그것을 정당화하는 서양 국제법 논리를 동원하였다.<sup>3)</sup>

북해도 및 사할린[樺太]지역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것은 16세기 말 막부가 蝦夷地를 松前藩의 영지로 인정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松前藩은 북해도 동부와 사할린 남부에 대해 직접 실지조사를 하는 등 세력

2) 한길사, 『CD 한국사』 11, 정창렬, 「근대민족의 형성-서설」 1994.

3) 허영란, 「명치기 일본의 영토 경계 확정과 독도-도서 편입사례와 '죽도 편입'의 비교-」 『서울국제법연구』 2003, p.5.

확장을 꾀했지만 영토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상태에서 17세기말 캄차카 반도를 점령한 러시아가 18세기에 접어들어 쿠릴[千島]로 남하하기 시작하자 일본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작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어 러시아의 관심이 서쪽으로 돌려지면서 한때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1840년대 이후 다시 사할린이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였고, 결국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의 화친조약에서 양국은 사할린 지역을 양 국민이 잡거하는 공유지로 남겼다. 그 후 1859년 9월에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에프가 도쿄만으로 내항하여 사할린이 러시아령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의 협상과정에서 사할린의 귀속문제가 지금까지의 역사적 과정과는 상관없이 금후의 자유경쟁에 의해 결정이 되리라는 것을 인식한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할린 지역에 대한 식민정책에 주력하였다. 그렇지만 러시아측도 流刑 등의 방법을 통해 식민정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민자 과건과 개척이라는 방법을 써서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란 쉽지 않았다. 러일 양국 국민이 잡거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현지에서 양국 사이에 석탄 채굴권, 어업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였다. 결국 사할린 문제는 1875년 5월 7일 모스크바에서 사할린[樺太]·쿠릴[千島] 교환협정이 조인되었다. 일본이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전부 넘겨주는 대신에 러시아는 쿠릴[千島]열도의 18개 도서를 일본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 협상과정에서 러시아측은 사할린 대신 일본에 넘겨줄 몇 개의 도서를 제시하고, 만일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섬의 수를 증가시키겠다고 하였다. 반면 일본의 副島 외무경은 征韓論에 바탕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더라도 러시아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대가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당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征韓 논쟁에 대해 미해결의 사할린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sup> 사할린·쿠릴협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토분쟁에 있어서 그 승패는 식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석탄 채굴권, 어업권의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식하였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독도침략은 선점론에 바탕하고 있다. 일본이 도서 선점에 의해 편입한 섬들, 즉 小笠原島(1876.10), 硫黃島(1891.9), 久米赤島·久場島·魚釣島(1895.1), 南鳥島(1898.7), 沖大東島(1900.9), 中ノ鳥島(1908.7) 가운데 南鳥島の 영토편입과정이 독도 편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지금까지 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의 편입 사례가 영향을 끼친 바가

4)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 3 -近隣諸国及び領土問題-』 鹿島研究所出版会, 1970, p.256 및 pp.265~272; 허영란, 앞의 논문 p.7.

크다. 오가사와라제도의 편입과정을 논하면서 이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1876년에 동경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져있는 오가사와라제도를 편입하였는데, 오랜 기간 영국과 미국도 이곳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컸다.

오가사와라란 이름은 1593년에 오가사와라 사다요리(小笠原貞頼) 民部大輔가 이 무인도를 발견한데서 유래하였지만 영주하지는 않았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태평양에서 포경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럽 각국 선박들이 오가사와라제도에 빈번하게 내항하기 시작하여 1817년경부터 외국인이 포경을 위해 거주하였다.<sup>5)</sup> 1830년 6월에는 세보리(Nathaniel Savory) 등 5명이 하와이 원주민 20여 명과 함께 무인도였던 이 섬에 이주하여 개척을 시작했다. 또, 서세동점의 기세 속에 청나라에 주재하던 영국 관리들은 본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중국시장의 확대는 물론 일본을 포함한 인근 여러 나라에 대한 시장 개척을 꾀했다.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에 눈독을 들인 영국은 1837년 조사를 명목으로 군함 로레이 호를 파견했다. 한편 1853년에는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인 페리 제독이 입항하여 섬을 조사한 뒤 세보리에게 貯炭用地를 구입하고 그에게 독립정부 수립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미국의 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던 길에 琉球에 들러 수호조약을 맺고 저탄소의 설치를 약속받은 페리는 귀로에 오가사와라제도에 들러 일본과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저탄소를 설정했고, 미국의 해군장군은 이 섬에 대한 적극적 점령방침은 수용하지는 않고 저탄용지의 설정만을 승인했다. 이에 이 섬의 주권 소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1854년 3월에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관심이 일단 수그러들었다.<sup>6)</sup>

일본은 1675년경 오가사와라제도를 순검한 이래 더 이상 개척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1830년 영국인과 하와이인으로 구성된 개척단이 이 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1846년 항로상의 요지인 이 섬에 외국인이 거주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훗날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長崎 주재 네덜란드 상관장인 비크(Pieter A. Bik)의 충고 역시 막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1853년 페리 내항 후 미국과 영국이 이 섬의 영유에 관심을 표하는 등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1860년 막부는 遣美사절단이 태평양을 횡단하고 올 때 오가사와라제도에 기항해서 실정을 시찰하라는 명령

5) 한철호, 「明治시기 일본의 도서선점 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그 의미」 『서울국제법연구』 제 16권 2호, 2009, p.107.

6) 민두기,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94 pp.192~193 및 鹿島守之助, 앞의 책, pp. 346~347, 허영란 앞의 글 p.8 참조.

을 내렸다. 비록 이 시도는 선박 사정 등으로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지만 사절단은 영·미 양국이 오가사와라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귀국 후 막부에 보고하였다. 오가사와라제도를 방치해왔던 일본은 미국과 영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오가사와라제도를 조사·순검키로 결정하였다.<sup>7)</sup>

1861년 12월 4일 外国奉行 미즈노 다다노리(水野忠徳) 등 총 107명의 일행이 오가사와라제도로 출발하여 1862년 3월 27일 돌아왔다. 이 기간 동안 미즈노 등은 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모아놓고 일본의 정령을 준수하도록 서약케 한 다음 地券을 나눠주고 ‘小笠原島新墾碑’를 세웠으며, 출장소를 설치해 오바나 사쿠노스케(小花作之助)를 주재시키고, 小笠原島取締規則과 港則을 정하는 등 일본의 속도로 삼는 조처를 취하였다. 한편 미즈노 일행이 출발하기 전인 11월 16일 막부는 老中 안도 노부마사(安藤信正: 信睦·信行) 등의 명의로 영·미 공사에게 小笠原島開拓再興 사실을 통고하였다.<sup>8)</sup> 이에 대해 미국공사 해리스(T. Harris)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영국영사 올콕(R. Alcock)은 “일본인이 최초의 발견자라 하더라도, 그 후 관리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구미의 법률에 의하면 일본의 소유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면서 이 섬이 어느 한 나라의 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6월 11일부로 막부는 올콕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오가사와라제도의 회수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했지만 영국 측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경계하는데 역점을 두는 바람에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막부는 미즈노의 보고에 기초하여 관리와 이민 80 여명을 이 섬에 파견해서 통치했지만 강경한 양이론의 득세로 외국과의 충돌이 빈번하자 일본정부는 1863년 5월 9일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개척시도를 중지하고 이주시켰던 주민들도 철수시킴으로써 ‘空島’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막부의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공도’정책은 명치유신 후인 1875년 말까지 약 12년간 지속되었다.<sup>9)</sup> 마찬가지로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정책을 ‘공도’정책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공도’정책의 경우 일본의 관리 파견이 없었지만 조선의 경우 수토관이 항례적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공도’정책이란 것도 문제가 있다. 이때의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개척의 중지, 이주 주민의 철수는 일본이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처, 즉 자기 주권의 포기를 의미

7) 한철호, 앞의 글 p.108 참조.

8) 한철호, 앞의 글 pp. 108~109 참조. 한철호의 견해는 田辺太一の 『幕末外交談』(平凡社, 1966)과 安岡昭男, 「小笠原島と江戸幕府の施策」(岩生成一編, 『近世の洋学と海外交渉』巖南堂書店, 1979)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9) 한철호, 앞의 글, p.109 참조.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가사와라제도는 ‘空島’가 아니었다. 서양이주자들에 의해 여전히 개척이 진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공도 정책’이란 용어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국공사 파크스(Harry S. Parkes)는 일본이 이 섬을 완전히 제외시킨 채 방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소속 여부를 추궁하였던 것도<sup>10)</sup> 서양인들에 의해 개척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1873년의 경우, 이 섬의 유력자인 벤자민 필스가 주일 미국공사를 방문해서 미국의 통치를 희망했지만 미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주민은 미국인 25명, 영국인 17명, 프랑스인 4명이었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일본 외무성 일각에서 1869년에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개척건의가 나오기 시작하여 1872~1873년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외국선박의 빈번한 출몰과 이 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징세문제를 제기하면서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1874년에 해군성, 외무성, 내무성, 대장성 등 4개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4성 합의안은 당시 오가사와라제도의 점거자인 미국인 피스(Benjamin Pease)가 일본 주재 미국공사를 통해 이 섬을 미국의 屬島로 삼기위해 청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만출병으로 인해 대책강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1875년 3월 18일 내무성은 4성 합의안을 전달하고 조인을 청구했다. 이때 외국공사들에게 오가사와라제도의 대책의 시행을 통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대장성과 외무성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대장성은 관리를 파견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외국공사에게 고지를 해야 신의를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외무성은 일본의 속도인 것이 명백하므로 통고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각국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타협이 되었다. 1875년 9월 24일 내무성은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방략을 재상신했고, 동년 11월 21일, 外務四等出仕 田邊太一을 포함한 회수위원을 파견하였다. 회수위원이 조사를 마친 후 12월 16일에 귀경하여 오가사와라에 대한 보호방책의 강구를 건의하는 복명서를 작성했다. 이때 주민으로부터 복종의 선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11월 초 회수위원의 파견을 통보받은 영국 공사 파크스는 외무성에 영국도 橫濱주재 영사를 오가사와라제도에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재차 일본이 이 섬을 ‘屬地’로 상정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데라지마가 “지금까지 수속도 있고, 또 近島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로 정했다”고 답하자 파크스는 “近島라는 이유로 속지로 정한다는 설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10) 『日本外交文書』 6, pp.397~398, #181; pp.355~356 # 151 부속서.

원근으로 屬否를 정한다면 유향도는 중국의 속지라고 말해도 괜찮은가?”라고 반박하였다. 또 “중전부터 수속도 있고, 10년 전에는 우리 관리를 파견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라는 데라지마의 발언에 관해서도 그는 “관리를 파견한 것은 귀국 뿐만 아니라 미·러, 그리고 우리나라도 파견하였다”고 응수함으로써 데라지마를 곤궁에 빠뜨렸다. 그렇지만 파크스가 열강 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의 조치를 승인하는 의향을 비추자 1876년 10월에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제도에 시행할 신법령을 제정하여, 17일에 寺内 외무경 명의로 일본 주재 각국 공사에게 오가사와라제도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며 규칙에 따라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sup>11)</sup>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영토편입의 경험은 1876년 전후의 ‘송도 개척’ 논의의 처리 때 그 논리를 세우는데 귀중한 경험이 되었음을 다음의 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가사와라제도의 회수위원인 田邊太一이 이때 외무성의 공신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세우는데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1870년 일본 외무성은 外務省出仕 佐田白茅, 森山茂, 齋藤栄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였는데, 4월에 제출한 시찰보고서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에 속한 시말을 보고한 것으로 보아 일본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영토확장의 정책을 개진하기 위해 오가사와라 개척 건의와 함께 죽도와 송도의 소속을 알기 위해 조선에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오가사와라제도의 편입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도제, 무주지선점론, 近島 이론을 동원하여 독도 뿐만이 아니라 울릉도마저 강제 편입을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 편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것을 다음의 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2.1 1876년 이후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의 추이과정

1876년의 오가사와라제도의 영토편입과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개국은 ‘죽도도해금지령’에 의해 울릉도 도해가 금지되었던 시마네현 사람들에게 죽도도해를 재개하는 호기로 여겨졌음을 ‘竹島渡海請願書’를 통해 알 수 있다.

불초 제가 어렸을 때, 오키국에서 약70리 정도 떨어진 서북쪽의 바다에 황막한 불모의 孤島가 하나 있어 이를 竹島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옛날부터 저희 집에서 모아두었던 책중 『竹島渡海記』라는 제목이 붙은 작은 책 한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생각이 깊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며 광주리 안에 있던 먼지 쌓인 종이에 불과하다고 여겼었는

11) 허영란, 앞의 글 pp.7~11 및 한철호 앞의 글 p.107 참조.



데, 메이지 유신 이래 홋카이도의 여러 황무지를 개척하여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자, 竹島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속한 작은 섬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조금 생각이 미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3, 4년간 그 섬에 관한 문헌 또는 설화를 얻고자 심혈을 기울여 찾아 헤맸으나, 그 섬은 徳川씨가 집권할 당시에 특히 엄하게 도해를 금했던 섬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문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저는 竹島에 뜻을 두고 큰일을 한번 해 보고는 싶었으나 그때까지는 결정을 못 내리고 한동안 마음속에 접어두곤 감히 발설하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 오가사와라섬에 鎮事官을 파견한다는 말을 듣자 매우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정부가 개간사업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 비록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을 굳건히 하여 '설령 먼 바다에 있는 불로의 작은 섬에 이르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을 세울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면 또한 어찌 마다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번에 그 섬으로 건너가 그 땅에 대해 직접 살펴보고, 그 후에 그 공적을 대대적으로 드러내어 국가 경영의 一端을 마련하자'고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도해 면허에 대해 허가해 주시기를 엿드려 바라는 바입니다.(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4호 '竹島渡海請願書')

1877년(명치 10) 1월 27일 시마네현 士族 戸田敬義는 메이지 유신 이래 홋카이도의 여러 황무지를 개척하여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자, 竹島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속한 작은 섬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조금 생각이 미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작년 오가사와라섬에 鎮事官을 파견한다는 말을 듣자 정부가 개간사업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였다는 것을 통해 메이지시대의 섬의 개척, 특히 오가사와라 섬의 영토편입에 고무되어 울릉도 도해를 청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戸田敬義는 3월 13일에 재차 청원서를 올리면서 도해가 실현되면 황국의 토지가 크게 확장되고, 국가의 이익이 되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또 국내의 無産者들을 만분의 일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동경부청 단독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관계 부서에 신속히 어떤 조치라도 취해주시기를 원하였다.<sup>12)</sup> 그러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戸田敬義는 4월에, 도해시기를

12) 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5호, “ 섬을 두고 한때의 개인적인 이익을 노리고자 하는 마음은 저에게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이 일이 실현되면 皇國의 토지가 크게 확장되고, 국가의 이익이 되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또 국내의 無産者들을 만분의 일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이 한 몸이 그 섬의 귀신이 된다고 해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도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올해의 도해시기를 놓치면 내년으로 미루게 되는데, 만일 1년 늦어져서 1년치의 이윤을 외국인에게 빼앗긴다면,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것을 살피셔서 동경부청 단독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관계 부서에 신속히 어떤 조치라도 취해주시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같은

놓쳤다면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sup>13)</sup> 그런데 6월 8일, 동경부지사 楠本正陵 명의로 ‘竹島 도해 청원에 대한 건은 허가할 수 없음’이라는 공문이 발급되었다.<sup>14)</sup>

시마네현 사족 戶田敬義가 죽도 도해청원서를 내게 된 것은 오가사와라 섬의 영토편입에 고무되었다고 하였는데, 1877년 3월에 지적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과 태정관이 ‘日本海内 竹島外一島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천명한 사실과 관련시켜 논의를 전개해보기로 한다. 대개 태정관이 1877년 3월 29일 “문의한 취지의 竹島外 一島の 건은 우리나라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 발단이 1876년 10월 5일에서 비롯되었음을 본고에서는 주목하고자 한다.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 개혁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지적을 작성하도록 지방정부에 훈령하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을 작성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측량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때 시마네현에 지적작성을 위해 파견된 직원이 시마네현의 지적편제에 竹島(울릉도)를 지적에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를 시마네현에서 오래된 기록이나 고지도 등을 조사해 내무성에 문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sup>15)</sup> 그것에 의해 시마네현이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품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貴省(내무성)의 지리기속사 직원이 地籍 편찬 확인을 위해 본 현을 순회하였는데, 日本海内에 있는 죽도조사의 건으로 별지 乙 제28호와 같은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섬은 에이로쿠 연간(1558-1569)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만, 旧 돗토리번 때, 겐나 4년(1618)부터 겐로쿠 8년(1695)까지 대략 78년간, 같은 번 영내 오키국 米子の 상인 大谷 甚吉과 村川市兵衛가 에도 막부의 허가를 얻고, 매년 항해하여, 섬의 동식물을 가지고 돌아가 내지에서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서나 낡은 편지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지와 같이 유래의 개략이나 도면을 덧붙여 우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섬 전체를 実檢 후, 상세를 덧붙여 기재해야 마땅하지만, 원래

때 수고를 끼쳐드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청원서를 냅니다.”

13) 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6호.

14) 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7호.

15) 『明治十年三月 公文録 内務省之部』시마네현이 내무성으로 보낸 질품서에 첨부된 ‘별지를 제28호’.

귀 현 관할 오키국의 한 쪽으로, 중래, 竹島로 불리는 고도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원래 구 돗토리번의 상선이 왕복한 선로도 있습니다. 문의서의 취지는, 구두로 조사 의뢰 및 협의를 했습니다. 더하여, 지적 편제에 관한 지방관 심득서 제5조의 취지도 있습니다만, 만약을 위해 협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의 건, 5조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기록이나 고지도 등을 조사해 주어, 내무성 본성에 문의를 올려 주셨으면 하여, 여기에 조회하겠습니다.

明治9년 10월 5일

지리료 12번 출사 田尻賢信

지리대속 杉山榮藏

시마네현 지적편제 御中

본 현의 관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북해 백 여리를 멀리해 線路도 확실하지 않고, 보통의 범선으로는 자주 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의 大谷, 村川家の 伝記 등 상세를 쫓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럿을 추측하기에, 관내 오키국의 북서에 위치해 시마네 일대의 서부에 부속된다고 보여진다면 본 현의 国図에 기재해 지적에 편찬하렵니다만, 이 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령을 바라겠습니다.

메이지 9년 10월 16일

#### 시마네현 참사 境二郎

시마네현은 죽도(울릉도)의 발견 시점이 에이로쿠 연간(15558~1569)에 발견되었고, 1618년부터 1695년까지 대략 78년간 돗토리번의 오키국 米子の 상인 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가 에도 막부의 허가를 얻고 매년 항해하여 상업활동을 하였음을 大谷, 村川家の 伝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죽도가 관내 오키국의 북서에 위치해 시마네 일대의 서부에 부속된다고 보여지므로 본 현의 国図에 기재해 지적에 편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마네현은 연안어업에서 어장 과밀현상에 따른 어장 침탈과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오가사와라제도 영토편입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大谷, 村川家の 伝記에 바탕하여 ‘죽도도해’를 염원하는 시마네현 어부들의 바램을 지적편찬의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질품서(1876. 10.16)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시마네현 출신으로서 동경에 거주하는 사족 戸田敬義가 ‘죽도도해청원서’를 동경부에 제출할 수 있었고(1877.1.27), 그의 ‘죽도도해청원서’ 제출은 시마네현과 연결되어 ‘죽도도해’를 받아내고, 시마네현 지적에 죽도를 넣겠다는 시마네현의 바램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의미까지 있을 것이다.

시마네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품서를 받은 내무성은 ‘죽도가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요지의 뜻을 갖고 있었지만 ‘版図의 取捨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조사문건을 첨부하여 태정관에게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何’란 질품서를 올렸다(1877.3.17). 이에 대해 태정관이 1877년 3월 29일 “문의한 취지의 竹島外 一島の 건은 우리나라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문서를 내무성을 통해 시마네현에 전달하였고,<sup>16)</sup> 또 동경부를 거쳐 ‘竹島 도해 청원에 대한 건은 허가할 수 없음’이라는 공문을 戸田敬義에게 내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戸田敬義가 동경부에 제출한 ‘죽도도해청원서’에 관해 그가 3월 13일 재차 청원을 하면서 “동경부청 단독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관계 부서에 신속히 어떤 조치라도 취해주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동경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다. 내무성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품서와 함께 ‘죽도도해

16) 『明治十年三月 公文録 内務省之部』

청원서'를 접한 일본 외무성은 자기 부처에 제출된 1876년(明治 9) 7월에 제출된 武藤平學의 '松島開拓之議'의 '송도'가 송도인가 아닌가를 논란을 벌이면서 송도개척원을 둘러싸고 외무성 관료들 사이에 갑론을박의 논쟁이 일어났다.<sup>17)</sup> 이의 이해를 위해 武藤平學의 '松島開拓之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松島開拓之議'<sup>18)</sup>

삼가 아뢰입니다. (중략) 국가가 강성해지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 역시 본의가 아니므로 별수 없이 저의 忠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서북지방에 있는 '松島'라는 한 섬에 대한 일입니다. 제가 2, 3년 전부터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 서너 차례 왕복하였는데 그때마다 매번 멀리서 보였습니다. 하나의 작은 섬이긴 하나, 장차 황국에 도움이 될 만한 섬으로서, 남쪽에 있는 오가사와라섬 보다도 한층 더 주의해야 할 땅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 없고 한 필지의 경작지도 없습니다. 자연히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감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벌목하여 선박에 싣고 간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으므로 다음에 그 개요를 적어 건의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오키의 북쪽에 있는 松島는 대략 남북으로 5~6리, 동서로 2~3리 정도가 되는 하나의 孤島로서 해상에서 본 바 한 채의 인가도 없는 섬입니다. 이 松島와 竹島는 모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섬들인데, 竹島는 조선에 가깝고 松島는 일본에 가깝습니다. 松島의 서북쪽 해안은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즐비하므로 나는 새가 아니면 가까이 갈수 없는 곳입니다. 또 그 남쪽 해안은 산맥이 바다 쪽으로 향할수록 점차 낮아져서 평탄한 곳을 이루었으며 산꼭대기 조금 밑에서부터 폭이 수백間이 되는 폭포수가 떨어지므로 평지에 전답을 만들어 경작하기에 편합니다. 또 해변 여기저기에 작은 灣이 있으므로 배를 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섬은 소나무가 울창하여 늘 검푸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산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고펠은, "일본에 속한 섬 중에 '松島'라는 섬 하나가 있는데 아직 일본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관할 하에 있는 섬을 다른 나라의 소유로 치부하면 일본의 보물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이 됩니다. 원래 그 섬에는 광산이 있고 거목이 있으며, 물고기를 잡아서 얻는 이익과 뿔나무를 해서 얻는 이익 등도 또한 적지 않으므로 저에게 그 섬을 임대해 주시면 매년 큰 이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또 속고해보았는데, 별채와 어렵 이익도 많겠지만 단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차 직하면 그 고펠이

17) 송도의 명칭과 개척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논의는 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8'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

18) 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8호, '松島開拓之議'.

라고 하는 자를 끌어들이 수 있습니다. ... 단지 그 섬의 큰 나무를 벌목하여 좋은 재목을 지금 성대하게 개항된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하거나 혹은 시모노세키로 보내 매각하여 그 이익을 얻게 되기를 희망할 뿐이며, 또 만일 광산이 있을 경우에는 광산도 역시 개발하고, 어민과 농민을 이주시켜 그들이 개척하는 땅을 계속하여 황국의 소유로 해 간다면 막대한 이익이 될 것 입니다.

이미 조선과 조약을 맺은 이상에는 함경도 부근도 개항되어 서로 왕복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松島’는 필히 그 뱃길에 있어서 중요한 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저들과 우리의 선박이 항해 중 폭풍을 만나 여러 날 표류하게 되어 뿔나무와 물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섬에 정박하면 되니 매우 편리한 섬입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날이 갈수록 더욱 융성해질 터이고, 각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을 수출입하는 항해가 도 폭풍을 만나거나 뿔나무와 물이 부족해지면 이 섬에 정박하는 일이 있게 될 터이므로 항구를 하나 만들고 등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항해가가 안심하고 돌아가서 황국의 어진 마음을 우러러보고, 황국의 어진 정치에 감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며 밖으로는 인을 베풀고 안으로는 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또 일본과 조선 양국에서 매년 표류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이 日朝 양국의 仁愛가 두터워지는 일이며 이에 더하여 각 나라 사람들도 더불어 혜택을 받는 일이 되니 이들이 황국을 존경하여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섬을 개척하여 농인과 어부를 이주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생산에 힘쓰게 하십시오. 제가 2, 3년 동안 이 해상을 항해한 것이 이미 서너 차례에 이르는데 볼 때마다 이 섬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明治 8년 11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해했을 때, 그 섬의 남쪽에서 폭풍을 만났고, 밤이 되자 배가 松島와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천신만고 하였는데, 어두운 밤이었고 또 비바람이 심하게 치고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여 더더욱 그 섬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어찌될지 몰라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한숨만 크게 내 쉰 적도 있었으니, 우선 그 섬에 신속히 등대를 설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明治9년 7월 武藤平学

武藤平学의 ‘松島開拓之議’를 살펴보면 松島와 竹島는 모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섬들인데, 竹島는 조선에 가깝고 松島는 일본에 가깝다고 하였지만 송도에 관한 언급을 보면 즉도, 즉 울릉도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송도’라고 하여 외부성에 개척원을 낸 것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무역에 종사한 사람들이 즉도(울릉도)에 어로활동을 하였던 시마네현이나 돗토리현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나온 오인으로 볼 수 있다. 武藤平学의 경우 지금의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을 아우른 지역인 미치노쿠(陸奥)의

士族이었다.<sup>19)</sup> 당시 항해에 참고한 지도 가운데 죽도와 송도의 지명이 잘못된 지도가 많았다. 그것은 서양지도에서 잘못 측량한 지도를 지볼트가 죽도와 송도로 잘못 비정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들 한다.<sup>20)</sup>

‘松島開拓之議’에서 주목할 사항은 하나의 작은 섬이긴 하나, 장차 황국에 도움이 될 만한 섬으로서, 남쪽에 있는 오가사와라섬 보다도 한층 더 주의해야 할 땅이라고 함으로써 오가사와라 영토편입에 즈음하여 송도 개척이 급선무임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竹島는 조선에 가깝고 松島는 일본에 가깝고, 일본에 속하는 섬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길목, 그리고 조선의 개국에 즈음하여 함경도 부근에 개항장이 설치되면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에 근거하여 우선 등대를 설치하고, 항해의 안전을 돕고, 그 섬의 큰 나무를 벌목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하거나 혹은 시모노세키로 보내 매각하여 그 이익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며, 또 광산도 개발하고, 어민과 농민을 이주시켜 개척하여 황국의 소유로 해 간다면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개국에 즈음하여 함경도 부근에 개항장이 설치되면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일깨운 것에서 병자수호조약의 체결로 인해 일본은 조선의 근해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통상과 어업 및 측량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송도개척 건의’의 호기로 여겼던 것 같다.

송도개척안을 접수한 외무성은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때 혹자는 송도에 손을 대면 조선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송도는 일본 땅에 가깝고 일본 지도에 일본 영역 안에 그려져 있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죽도는 德川氏 때 갈등이 생겨 조선에 넘겨주었으나 송도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니 일본 땅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조선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쪽에서 더 가깝고 먼지에 대해 논하여 일본 땅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또 일조간의 왕래와 북쪽의 외국 땅과의 왕래에 있어 중요한 땅이므로 일본이든 조선이든 빨리 좋은 항구를 선택해 먼저 등대를 설치하는 것이 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sup>21)</sup> 이때 일본 외무성은 송도개척안의 송도가 죽도, 즉 울릉도임을 대부분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이때 武藤平學의 송도개척안을 읽은 児玉貞陽은 10개조의 의견서를 덧붙여

19) 北沢正誠의 『竹島考証』에는 ‘武藤平學’, 혹은 ‘武藤一學’으로 혼동되어 기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武藤平學’으로 통일해 언급하였다.

20) 이에 관해서는 도명의 혼란에 관한 내용은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1966)에 정리되어 있고, 필자는 최근 「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독도, 울릉도) 명칭 변경의도에 관한 검토」(『민족문화논총』 5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12)란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언급하였기에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21) 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8호, ‘松島開拓之議’ 附.

외무성에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竹島考証』 下에 실려 있는 別紙 제9호와 10호이다. 별지 제9호(명치 9년 7.13)에는 송도개척이 작금의 급무이고, 당시 영토 편입을 진행하고 있는 오가사와라섬 같은 것도 이미 착수할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서, 오가사와라 섬에 비해 松島는 한층 더 중요한 섬이라고 하면서 북방의 러시아 사람이 엿보게 되는 수도 있으니 빨리 개척에 나서도록 촉구하였다. 별지 제10호에는 송도 개척 착수 단계 예상안까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松島개척 착수 단계 예상안’

- 제1 개척인이 작은 집을 짓고 거주함
  - 제2 벌목
  - 제3 항구를 만들 곳을 확정
  - 제4 등대 건설
  - 제5 좋은 목재, 기타의 물품을 수출
  - 제6 토지를 개척
  - 제7 장소를 정해 선박용 여러 물품을 보관
  - 제8 민가를 지어 사람을 이주시킴
  - 제9 漁獵할 준비를 함
  - 제10 농사를 시작함
- 기 타 산천 구릉을 개발하여 사업을 일으킴

児玉貞陽의 두 서신에 대해 외무성 기록국장인 渡邊洪基의 의견을 적은 서신이 『竹島考証』(下) 별지 제11호와 제12호이다. 별지 제11호에서 “소위 ‘松島’라는 것이 竹島라면 저들에게 속하는 것이고, 만일 竹島 외에 松島라는 섬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말에도 역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로 그 땅의 형세를 살펴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정하고 어느 곳에 책임을 지울 것인지를 양국 간에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시마네현에 조회하여 종래의 예를 조사하고 그와 함께 艦船을 보내어 그 지세를 살피고 만약 저들이 이미 그 일에 착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별지 제11호와 제12호는 작성된 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별지 11호는 시마네현에 조회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아 시마네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품서(명치 9년 10월 5일)를 접수한 내무성이 1877년 3월 17일 태정관에게 질품서를 내면서 외무성이 알게 된 이전의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별지 제12호는 戸田敬義의 지도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로 보아 1877년 1월 27일에 동경부에 제출한 ‘죽도도해청원서’ 작성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sup>22)</sup> 별지 제12호 작성 이전에 일본 외무성은 지적편찬에 관한 시마네현의 질품서와 戸田敬義의 ‘竹島渡海請願書’를 검토했지만 竹島에 관한 기록만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송도에 대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 사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에 종사하던 시모사국(지금의 후쿠시마) 이나바군 사쿠라다정 상인인 齋藤七郎兵衛이 ‘송도개척청원서 및 건의서’를 1876년 12월 19일 영사 瀨脇寿人을 통해 제출하였다. 이 건에 대해 명치 10년(4월 25일) 일반서신 제1에 공신국장 田邊太一이 보낸 籤紙에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로 우리 영역에 속해 있지 않으니 齋藤 某라는 자의 청원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림”이라고 하여 당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업에 종사하는 상인들, 즉 武藤平学, 齋藤七郎兵衛 등이 개척을 건의한 ‘松島’는 조선의 울릉도이고,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瀨脇寿人 무역사무관은 송도개척안을 제출한 武藤平学을 겨울에 일등 서기 견습자로 발탁해서 ‘留守居’라고 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시키고 본인은 송도개척에 관한 허가가 떨어진다면 송도에 상륙하여 지형과 재목의 종류 및 크기, 어업형태, 항구 상태를 보고 다음 해 봄에 도해할 준비를 하여 적당한 때 중국 상해로 가서 중국인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공신 3호를 1877년 6월에 외무성으로 보내고,<sup>23)</sup> 송도개간에 관한 재차의 건의를 하였다.<sup>24)</sup> 이에 대해 공신국장 田邊太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담은 첨지를 남기고 있다.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로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는 섬이 아니다. 文化時代에 이미 그에 대한 서신을 조선정부와 주고받았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간에 착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또 돌아올 때 상륙하여 항구 등을 살펴본다고 하였는데 어떤 배를 고용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해군 선함을 고용하겠

22) 『죽도고증』(下)의 별지 제10호 아래에, 같은 해 11월 블라디보스토크항 무역사무관인 瀨脇寿人이 러시아에 가게 되었다는 기록과 별지 제13호에 실린 ‘송도개척청원서 및 건의서’가 ‘명치 9년 12월 19일에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별지 제11호와 제12호가 1876년 11월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오인하기 싫다.

23) 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17호

24) 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18호, “지난 겨울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송도’ 개간 건에 대해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군함 7, 8척이 작년 겨울부터 미국에 갔다가 하나 둘 이곳으로 입항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나라 배가 입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군함들은 한국 땅에서부터 송도 근처 바다까지 측량하면서 한국 땅을 정탐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송도 개척에 착수한 후에는 아무리 분하게 여겨도 소용없으니 앞서 건의한 대로 9월에 제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섬에 상륙하여 해안의 지형에서부터 산림과 산물 등에 대해 살펴두고 다음 해 봄에 개척에 착수하고자 하여 이 점에 대해 급히 여쭙는 바입니다. 명치 10년 7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항 주재 무역사무관 瀨脇寿人”



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쓰비시의 기선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가능성 없는 일이다. 하물며 상해에 가서 직접 판매하는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볼 때 섬에 나무가 있다고는 하나 잘라서 내 온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그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北沢正誠, 『竹島考証』 下, 別紙 제17호 籤紙)

瀬脇寿人の 송도개척 건의에 대해 외무성은 각 관리들에게 의견서를 제시하게 하였지만 異見이 많아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1878년 8월 15일, 齋藤七郎兵衛의 ‘松島開拓請願書’가 재차 瀬脇寿人을 통해 제출되었다. 이에 송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는데 찬반이 분분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竹島考証』 下, 別紙 제21호가 그에 대한 의논을 정리하고 있다. 甲은 개항에 대한 여부는 다음에 결정하고 시찰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송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이름이지만 실제로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반대하면서, 송도는 결코 개척할 수도 없고 개척해서도 안되는 섬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을은 개척여부는 조사 후에 정하여야하고, 병은 “영국 신문에 ‘러시아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는 북태평양에 해군이 주둔하는 병참지 1개소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송도 같은 섬은 혹 저들이 주목하는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개척여부를 논하지 말고 그 섬의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하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주장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일찍부터 전략상 울릉도와 독도를 주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해 독도를 절취하겠다는 복안이 이 무렵부터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섬의 국적 여부를 떠나 조사할 필요성을 느낀 기록국장 渡邊洪基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별지 제 22호에 개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공신국장 田邊太一은 별지 23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신중한 의견을 펼쳤다.

듣기에 松島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합니다.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구정부 때에 한 차례 갈등을 일으켜 문서가 오고간 끝에 울릉도가 영구히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며 우리 것이 아니라고 약속한 기록이 두 나라의 역사서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보물을 넘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겨우 우리와 한국과의 교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를 싫어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거에 다시 틈을 만드는 것을 외교관들은 꺼릴 것입니다. 지금 송도를 개척하고자 하나 송도를

개척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 송도가 아직 무인도인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 소속이 애매하므로 우리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해군성이 배 한 척을 그곳으로 보내서 측량 제도하는 사람, 생산과 개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시켜, 주인 없는 땅[無主地]임을 밝혀내고 이익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도 고려해 본 후, 돌아와서 점차 기회를 보아 비록 하나의 작은 섬이라도 우리나라 북쪽 관문이 되는 곳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됨을 보고한 후 그곳을 개척해도 되므로 瀨脇씨의 건의안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

田邊太一은 별지 17호에서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로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는 섬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瀨脇壽人の 송도개척 건의서에 나오는 송도는 울릉도임을 밝힌 것이고, 별지 丁 23호에서 “松島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한다”는 것을 밝히고, 개척하고자 하는 섬으로서의 송도, 즉 울릉도는 구정부에서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조사를 반대하였다.

이상과 같이 갑·을·병·정의 논의가 분분하여 정해지지 않으므로 조사하지는 말도 중단되었고, 1883년(명치 13) 9월에 아마기함 승무원이며 해군소위인 三浦重郷 등이 회항할 때 ‘松島’에 가서 측량하였는데, 그 땅은 옛날부터 울릉도였고, 그 섬의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을 竹島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의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년간의 의심과 논의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었다. 『죽도고증』 下의 마지막 별지 제24호는 다음과 같은 三浦重郷의 ‘수로보고 제 33호’를 실고 있다.

제24호

수로보고 제33호

이 기록은 아마기함 승무원 해군소위 三浦重郷의 간략도 및 보고기록이다.

日本海

松島 [韓人은 이것을 울릉도라고 한다]에서 정박지 발견

松島는 우리나라 오키에서 북서쪽으로 140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섬은 종래에는 바닷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었으므로 정박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 아마기함이 조선에 갔을 때 그 섬에 들러서 그 섬의 동쪽 해안이 정박지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의 그림이 즉 그곳입니다.

明治 13년 9월 13일

수로국장

해군소장 柳植悦

1882년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의해 『竹島考証』을 지은 北沢正誠은 “ 明治 13년 아마기함이 돌아올 때 松島를 지나치게 되었으므로 상륙하여 측량한 후 처음으로 松島는 울릉도이며 그 밖의 竹島라는 것은 하나의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일에 대한 것이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오늘날의 松島는 즉 원록 12년(1699)에 竹島라고 불렀던 섬으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영역 밖에 있었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三浦重郷의 별지 제24호에는 ‘竹島’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 밖의 竹島라는 것은 하나의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수로보고 제 33호’가 三浦重郷의 보고를 축약한 것인지 北沢正誠의 견해가 삽입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어쨌든 이것이 독도를 1905년에 ‘竹島’로 비정하게 된 이유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 ‘별지 정 23’에서 田邊太一은 “松島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송도를 개척하고자 하나 송도를 개척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였다. 또 “송도가 아직 무인도인 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 소속이 애매하므로 우리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해군성이 배 한 척을 그곳으로 보내서 측량 제도하는 사람, 생산과 개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시켜, 주인 없는 땅[無主地]임을 밝혀내고 이익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도 고려해 본 후, 돌아와서 점차 기회를 보아 개척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田邊太一의 견해와 훗날 1905년 일본이 竹島(독도)를 무주지라고 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하게 된 과정을 비교해보면 田邊太一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04년 9월 25일 일본 군함 新高号가 망루 설치 예비탐색조사를 위해 松島(독도) 조사활동을 벌였고, 뒤이어 독도를 ‘무주지선점론’에 의해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 점에서 1876년 죽도와 송도의 개척 논의의 과정에서 田邊太一이 松島(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을 해군성을 통해 독도를 조사하여 무주지임을 드러내고, 기회를 보아 개척을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흔히들 일본이 도서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면서 근거로 삼은 논리는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었고, 南鳥島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고, 이 사례는 차후에도 도서 편입의 모델로 참고대상이 되었고, 竹島(독도)의 편입과정에서도 그러했다고 한다.<sup>25)</sup> 일본정부의 南鳥島 편입 논리와 독도 편입 논리를 아래와 같이 비교하면 거의 복사판일 정도이다.

<내무대신 芳川顯正이 내각총리대신 伊藤博文에게 보낸 청의서(1898년 3월 14일자)>

25) 허영란, 앞의 글 p.19.

…이 도서가 지리상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논할 것도 없지만 종래 이 섬은 無人島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두지 않았는데, (명치; 인용자 주) 29년에 우리나라 사람인 水谷新六이라는 자가 재삼 이 섬으로 회항하여 직접 섬을 탐험하고 이번에 섬의 차용을 출원함에 따라 이에 도명을 확정하고 소속을 관명을 필요가 있어 이 섬을 水谷島라 이름짓고 금후 동경부 소속 小笠原島司의 소관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각의를 청구한다.(『公文類聚』 第29編 明治38年 卷1)

<南鳥島 편입문제에 대한 법제국 의견(1898년 7월 1일자)>

…마카스도에 대해 바로 지리상 우리나라에 소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만 타국이 그것을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水谷新六이라는 자가 明治 29년 12월이래 이 섬에 이주민을 옮기고 가옥을 설치하여 鳥魚의 포획 및 개간에 종사하여 눈부시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국제법상 소위 점령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나라 소속으로 하여 동경부 소속 小笠原島司의 소관으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公文類聚』 第29編 明治38年 卷1)

별지 내무대신 請議 무인도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隱岐島를 踞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 명치明治 36년 이래 중정양삼량이란 자가 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本邦所屬으로 하고 島根県所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請議대로 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公文類聚』 第29編 卷1)

그러나 실상 田邊太一의 제안에 따라 南鳥島와 독도 편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882년 일본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죽도고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田邊太一의 ‘無主地’ 논리에 영향을 받아 ‘空島制’ 논리를 개발하였음을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죽도는 元和 이래(1615~1623) 80년 동안 우리 국민이 漁獵을 하던 섬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라는 것을 믿으며, 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어렵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였다. 저들이 처음에는 竹島와 鬱島가 같은 섬임을 몰랐다고 답해 왔으나 그에 대한 논의가 점점 열기를 띠게 되자 죽도와 울도가 같은 섬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우리가 국경을 침범했다고 책망했다. 古史를 보자면 울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文祿以來(1592~1614) 버려두고 거두지 않았다. 우

리나라 사람들이 그 빈 땅[空地]에 가서 살았다. 즉 우리 땅인 것이다. 그 옛날에 두 나라의 경계가 항상 그대로였겠는가. 그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되고, 버리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된다. 우리 동양 제국의 3백년간의 예를 들어 논해 보자. 대만은 예로부터 명나라의 땅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사람이 거두어들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섬을 버리자 네덜란드가 갑자기 점거하여 네덜란드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鄭氏가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았으니 또 鄭氏의 땅이 되었던 것이다. 興安嶺 남쪽은 예로부터 청나라 땅이었다. 청나라 사람들이 거두어들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섬을 버리자 러시아족이 즉시 그곳을 점거하게 되었다. 영국과 인도, 프랑스와 베트남, 네덜란드와 아시아 남양군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조선만이 홀로 80년간 버려두고 거두지 않던 땅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국경을 침범했다고 책망하고 있다. 아무런 논리도 없이 옛날 땅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당시 정부는 8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漁獵을 해올 수 있었던 그 이익을 포기하고 하루아침에 그 청을 받아들였으니 竹島에 鬱島란 옛날 이름을 부여해 준 것은 당시의 정부인 것이다. 실로 당시는 항해를 금하는 정책을 썼다. 외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그로 인해 오가사와라섬을 개척하자는 말이 나왔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왜 죽도를 돌려주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당시의 정책은 편한 것만을 추구하였을 뿐 개혁하여 강성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竹島考証』 中卷)

北沢正誠은 위 사료에서 보다시피 죽도를 조선의 땅임을 결론으로 내세우면서도 『竹島考証』의 곳곳에서 ‘버려진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된다’는 것을 논리를 전개하였다. 일본 외무성이 『竹島考証』을 통해 1876년 田邊太一이 제시한 ‘無主地 입증’ 논리와 ‘버려진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된다’는 ‘空島制’ 논리를 접하면서 이후의 영토편입에 ‘무주지선점론’을 적극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맺음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1) 1876년 일본에 의한 조선개국과 오가사와라 영토편입에 의해 크게 고무된 일본인들은 ‘울릉도쟁계’로 인해 발길이 끊어졌던 울릉도와 그 해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호기로 여겼다. 시마네현에서는 지적편찬을 기회로 하여 竹島(울릉도)를 지적에 등재하고자 하여 일본 내무성에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연계되었을 시마네현 사족 戶田敬義는 동경부에 ‘竹島渡海請願書’를 제출

하였다. 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업에 종사하던 武藤平学은 외무성에 새로운 섬인 ‘松島’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松島開拓之議’를 제출하였고, 뒤이어 齋藤七郎兵衛의 ‘松島開拓請願書’등이 잇달아 제출되었고, 여기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무역사무관 瀨脇寿人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이 3가지 건은 지금까지 일련의 연속된 과정에서 접근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사안으로만 연구되어온 한계가 있었다.

- 2) 태정관에서 竹島를 조선의 땅이라 규정하고 지적편찬에 제외할 것을 명하고, 또 戸田敬義의 죽도도해청원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외무성도 松島가 곧 竹島(울릉도)임을 인지하였지만 一島 二名說 등의 논란을 벌이면서 ‘松島’란 이름에 집착을 보이는 등, 개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결국 갑론을박 속에 ‘松島’가 ‘竹島’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竹島(울릉도)’를 ‘竹島’라 하지 않고, ‘松島’라고 한 것은 ‘울릉도쟁계’로 인해 ‘죽도(울릉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그 소속이 모호한 ‘松島’란 이름을 갖다 부쳤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후 일본에서는 독도를 ‘松島’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리양코트’, ‘랑코드’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마네 현 등에서는 여전히 울릉도를 ‘竹島’로, 독도를 ‘松島’로 부르고 있었다.
- 3) 1876~1877년 사이에 외무성에서 ‘松島’ 개척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영토편입에 대한 이론 정립의 방법론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영토편입에서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그 논리는 이미 오가사와라 영토 편입에 활용한 논리이다. 또 오가사와라 영토편입의 조사활동에 참여하였던 공신국장 田邊太一이 송도를 ‘無主地’라는 것을 입증하여 기회를 보아 개척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때의 논의의 과정을 검토한 北沢正誠은 일본 외무성의 지시를 받고 만든 『竹島考証』(1882)에서 ‘버려진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된다’는 ‘空島制’론을 펼쳤다. 1876년 田邊太一이 제시한 ‘無主地 입증’ 논리와 北沢正誠이 ‘버려진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된다’는 ‘空島制’ 논리에 바탕하여 ‘무주지선점론’을 가다듬어 南鳥島, 竹島(독도) 편입에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주지선점론’을 적극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876년의 오가사와라 섬의 영토편입과, 이에 자극받은 ‘죽도개척청원서’와 ‘송도개척청원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토편입논리의 대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参考文献】

- 김용구(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 김호동(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 \_\_\_\_\_ (2009), 「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독도, 울릉도) 명칭 변경의도에 관한 검토」 『민족문화논총』 5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 민두기(1994),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편(2009),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경인문화사
- 송병기(2007), 『울릉도와 독도』(재정판) 단국대학교출판부
- 최문형(2005), 「러일전쟁과 일본의 독도 점취」 『역사학보』 188
- 최문형(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2005),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 침탈』 경인문화사
- 한철호, 「明治시기 일본의 도서 선점 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그 의미」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2호, 2009
- 허영란(2003), 「명치기 일본의 영토 경계 확정과 독도-도서 편입사례와 ‘죽도 편입’의 비교-」 『서울국제법연구』 제10권 1호
- \_\_\_\_\_ (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 현광호(2007), 『대한제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선인
- 北沢正誠(1882), 『竹島考証』
- 奥原碧雲(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 鮎沢信太郎(1943), 『大日本海-日本地理学史の研究』 京城社出版社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 鹿島守之助(1970), 『日本外交史 3 - 近隣諸国及び領土問題』 鹿島研究所出版会
- 池内敏(2006), 「竹島渡海と鳥取藩」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 要 旨

- 1) In 1876, inspired by Choseon opening policy by virtue of Japan and acquisition of Ogasawara islands territory, Japanese had opportunity to expand the activity to the Ulleungdo island and its sea where Japan had stopped fishing activity around the sea for hundreds years after 'One Takeshima(Ulleungdo) Dispute(竹島一件)'. Shimane Ken of Japan submitted a request document about the listing Takeshima(now Ulleungdo) on the map to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facing the map production schedule, and ruling family of Shimane Ken Mr.Toda Takayoshi(戸田敬義) submitted a petition for 'Sailing to Takeshima(Ulleungdo)' to Tokyo Government. Also, Mr. Muto Heigaku(武藤平学) who engaged in trade business at Russia Vladivostok suggested a report about the intention of cultivation for new island he founded 'Matsushima(松島)' to Japan MOFA, and soon Mr. Saito Shichirohei(齋藤七郎兵衛) submitted a petition for 'Matzushima Cultivation', which was deeply related to the Japanese official of commercial department Mr. Sewaki Hisato(瀬脇寿人).
- 2) Prime Ministry of Japan ordered to exclude Takeshima(Ulleungdo) from Japanese map production process because the island was Choseon territory and didn't accepted the petition of Mr. Toda Takayoshi(戸田敬義) for Takeshima(Ulleungdo) sailing, which means Matzushima was recognized as same island with Takeshima(Ulleungdo) by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t Japan could not abandon the thought of cultivation of the island on the basis of dispute for two names of 'Matzushima(松島)'. After serious discussion, Japan had to admit the name 'Matzushima(松島)' was another name of 'Takeshima(Ulleungdo;竹島)'. However, Japan named 'Takeshima(竹島; Ulleungdo)' as 'Matzushima(松島)' because 'Takeshima(Ulleungdo;竹島)' was definitely cleared as Choseon territory at the 'One Takeshima(Ulleungdo) Dispute'. So, Japan named again a vague 'Matzushima(松島)' to Ulleungdo and Takeshima(竹島) name to Dokdo.
- 3) The procedure of debate during 1876~1877 in Japan MOFA on 'Matzushima(松島)' cultivation induced a theoretical foundation of method for territory acquisition. In the process, the logic of proof for distance in the process of territory acquisition, and the Head of Japan MOFA Public Division Mr. Tanabe Taiichi(田邊太一) who engaged in the Ogasawara islands territory



acquisition activity suggested a method to cultivate the ‘Matzushima(松島)’ proving ‘ownerless’ at any proper opportunity. Mr. Kitazawa Deisei(北沢正誠) who reviewed the discussion procedure discoursed a logic of ‘vacant island policy’ which means ‘acquisition of ownership for the wasted land’ in the paper 『Takeshima Report(竹島考証)』(1882) which was edited by Japan MOFA Order. The logic of ‘Proof of ownerless’ in 1876 by Mr. Tanabe Taiichi(田邊太一) and Mr. Kitazawa Deisei(北沢正誠)’s logic of ‘acquisition of ownership for the wasted land’ for the ‘theory of prior acquisition of ownerless land’ were adopted to the acquisition of Minami Dorishima(南鳥島) and Takeshima(Dokdo).

キーワード： Meiji Era, Takeshima, Matzushima, Dokdo, Ulleungdo, Ogasawara islands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